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13 선고 2024가단12652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8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2,5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91,225,893원 및 그중 85,756,582원에 대하여 2024. 8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 주식회사는 2022. 3. 원고(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이었다)로부터 1억 2,500만 원을 대출받았고, 피고는 이에 대하여 1억 6,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, 대출금 채무는 2024. 8. 13. 기준 91,225,893원인데, 그중 원금은 85,756,582원인 사실, 연체이율은 연 11.9%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162,5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91,225,893원 및 그중 85,756,58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. 8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